리스크관리규정

정 : 2001. 6. 5 19차 개정 : 2018. 1.25 1차 개정 : 2001. 9.10 20차 개정 : 2018. 8.31 2차 개정 : 2003. 7.30 21차 개정 : 2019. 6.27 3차 개정 : 2004. 3.29 22차 개정 : 2022. 9.16 4차 개정 : 2004. 7.29 23차 개정 : 2023. 5. 2 5차 개정 : 2004.12.17 6차 개정 : 2006. 2.27 7차 개정 : 2006. 8.28 8차 개정 : 2007. 4.16 9차 개정 : 2008. 8.26 10차 개정 : 2009.12.31 11차 개정 : 2010. 7. 6 12차 개정 : 2010.10.21 13차 개정 : 2011. 4.25 14차 개정 : 2011.11.10 15차 개정 : 2012. 5. 7 16차 개정 : 2014. 3.20 17차 개정 : 2015. 9.21 18차 개정 : 2017. 1.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의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공사 경영의 안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리스크"라 함은 공사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 또는 불리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말한다.
- 2. "리스크관리"라 함은 리스크의 발생원인과 규모를 파악, 분석하고 적정성여부를 평가하여 <u>리스크를 부담, 경감 또는 회피</u>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3. "적정리스크"라 함은 인식, 측정, 통제가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 4. "인수리스크"라 함은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신용리스크 : 수출입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 국별 리스크(Country Risk)를 포함한다.
 - 나. 환리스크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다. 이자율리스크 : 이자율변동보험에 있어 이자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5. "재무리스크"라 함은 무역보험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신용리스크 : 무역보험기금운용과 관련 무역보험기금 예치금융기관, 채권발행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나. 시장리스크 : 금리, 환율, 유가증권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다. 유동성리스크 :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6.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사무리스크 :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고 또는 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나. 전산리스크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전산시스템의 정지, 혹은 컴퓨터 범죄 등 전산시스템 관련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다. 경영관리리스크 : 경영에 대한 판단 오류, 경영전략 시행 착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 실패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라. 평판리스크 : 영업상의 실패, 관련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외부의 인식이 나빠지는 경우에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마. 법적리스크 : 법령, 관련제규정의 위반 및 부적절한 법률행위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
- 7. "통합리스크"라 함은 공사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인수·재무·운영리스크 등을 포괄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 8. "예상손실(EL: Expected Loss)"이라 함은 향후 1년간 위험주체의 부도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을 말한다.
- 9. "미예상손실(VaR : Value at Risk)"이라 함은 <u>향후 1년간</u> 위험주체들의 동시 부도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말한다.
- 10. 위험성향(Risk Appetite)은 가용기금 대비 최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공사의 판단을 말한다.
- 11. "동일기업 최대한도"라 함은 동일기업에 대한 위험편중을 막기 위해 기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설정하는 동일기업에 대한 위험량 등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제4조(리스크관리 대상) 리스크관리는 인수리스크, 재무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 리스크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1. 경영상의 목표와 목표추진 중 발생하는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2. 사전적으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발생을 예방한다.
- 3.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한다.
- 제6조(리스크관리 업무분장) ①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업무를 통할하여 관리한다. ②각 부서(부, 실, 지사, 주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요시 부서 업무와 관련된 세부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및 운용
 - 2. 리스크관리 내규, 지침 등에서 정한 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 업무
 - 3.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요청한 리스크관리 관련 이행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담당본부장이 <u>별도의 내규 및 지침</u>으로 정한다.

제 2 장 리스크관리

제8조(리스크관리 절차) 리스크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 1. 리스크의 인식 :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 소재를 파악
- 2. 리스크의 측정 : 리스크 종류별로 측정방법을 정하고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
- 3. 리스크의 통제 : 리스크를 회피·축소하거나, 적정리스크를 유지관리
- 4. 리스크의 보고 : 리스크 수준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제9조(리스크측정 원칙) 리스크측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 1. 리스크는 계량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치로 측정한다.
- 2. 리스크 측정방법은 정기적으로 Feedback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 제10조(리스크관리관련 업무협조)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은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에 소관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수립, 시행, 관리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내규 등에 대한 합의) 각 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정·개폐시 사전에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심의대상건은 제외한다.
 - 1. 약관 및 포괄보험 특약
 - 2. 인수규정 · 요령
 - 3. 위임전결규정
 - 4. 자금운용규정·요령
 - 5. 자금취급요령, 보험계약준비금 적립기준
 - 6. 상사신용조사규정, 상사신용조사요령
 - 7. 국별신용조사규정, 국별신용조사요령
 - 8. 헷지업무요령
 - 9. 보험요율서 운영규정
- 10. 통계작성요령
- 11. 기타 상기한 내규와 관련된 요령, 방침, 지침 등(본부장 전결 이상)
- 12. 업무협약 (단, 개별 인수관련 협약 또는 기관간 공식적인 협약 이전에 체결하는 MOU (양해각서) 등은 제외)
- 제12조(통합리스크의 관리) ①<u>가용기금</u>과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u>설정한 허용한도를 통하여</u> 통합리스크를 관리한다.
 - ②가용기금은 미예상손실 발생시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_____ 가용기금 = 기금총계^{주)} - Max[(예상손실 - 지급준비금), 0]

- 주) 직전년도말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총계 기준(단, 회계감사의견 확정 전에는 잠정치 사용가능)으로 하되, 최근일자 가용기금 및 예상 가용기금 활용가능
- ③위험성향(Risk Appetite)은 <u>안정적 기금관리를</u> 위해 1.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용기금의 규모, 사업계획, 경영전략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1.0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④통합리스크 연간 허용한도는 가용기금에 위험성향을 곱하여 산정한다.

통합리스크 허용한도 = 가용기금 x 위험성향

제13조(인수리스크의 관리) ①인수리스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1. 인수리스크는 계량적인 방법 등을 통해 측정·관리한다.
- 2. 국내기업별·국외기업별·보험(보증) 종목별·국가별·영업부서별 등으로 구분하여 (총액) 한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 3. 개별적인 인수리스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관리한다.
 - 가. 인수감리
 - 나. 모니터링
 - 다. 기타 필요한 방법
- ② 동일기업 최대한도는 위험주체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기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 국내 동일기업 최대한도는 국내기업에 대한 위험량의 최대한도로서 무역보험기금의 최근연도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총계의 50%로 관리·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 가. 적용대상 기업의 신용도가 국내신용평가사 AA 이상이거나 국제신용평가사 A 이상인 경우
 - 나. <u>「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단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해 추가로 보험이나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
 - 다. 나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 등에 따라 추가로 보험이나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
 - 라. 공사가 추가로 보험 또는 보증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보험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간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 마. 기타 시장개척, <u>무역진흥, 국가 간 협력사업</u> 등 공사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검토하고 경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 2. 국외 동일기업 최대한도는 국외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의 <u>위험</u> <u>량의 최대한도</u>로서 U\$25억으로 설정·운영한다. 다만, 시장개척, <u>무역진흥, 국가 간 협력사업</u> 등 공사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검토하고 경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u>이를 초과 가능하며</u>, 「리스크관리·측정 요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u>위험량</u> 산정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리스크관리·측정 요</u>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재무리스크의 관리) 재무리스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1. 재무리스크 총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계량적인 방법 등을 통해 측정 · 관리한다.
- 2. 자금운용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5조(운영리스크의 관리) 운영리스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1. 계량적인 방법 등을 통해 측정·관리한다.
- 2. 정기적으로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 3.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16조(통계시스템 유지 및 관리) 각 부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되는 업무 관련 통계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스템구축 및 관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리스크관리위원회

- 제18조(구성) ①리스크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리스크관리담당본부장
 - 2. 단기인수담당본부장. 다만, 제19조 <u>제1항</u> 제2호 및 제3항 제1호의 안건 제안부서가 관할하에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외
 - 3. 중장기인수담당본부장. 다만, 제19조 <u>제1항</u> 제2호 및 제3항 제1호의 안건 제안부서가 관할하에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외
 - 4. 리스크관리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 4인. 다만,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리스크관리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나. 리스크관리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 다. 공인회계사(CPA), 공인재무관리사(CFA), 보험계리사 공인자격증 보유자로서 5년 이 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 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 공적기관의 리스크관리 유관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위원장은 리스크관리담당본부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1인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제1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호의 위원 중 리스크관리담당본부장이 지정하는 1인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 제19조(업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가. 통합리스크 및 리스크유형별 허용한도 책정
 - 나.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동일기업 최대한도의 변경
 - 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업무방법서」 개정을 수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종 보험(보증)의 도입
 - 3. 「리스크관리규정」의 개폐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는다.
 - 1. 정기(분기 또는 반기)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
 - 2. 매년도말 결산결과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인수 관련 경영위원회 부의안건 중 「리스크관리·측정 요령」에서 정하는 안건
-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측정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의2(보고)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1.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의결결과
-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 제20조(구성) ①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산하에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실무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실무위는 업무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추가위원은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구 분	위원회 구성	
공통 위원	 1.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2. 경영기획담당부서장 	
추가위원	1. 감리담당부서장 2. 자금운용담당부서장 3. 신용조사담당부서장 4. 영업기획담당부서장 5. 보상담당부서장 6.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장	

③위원장은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리스크관리담당본부장이 지정하는 위원 1인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21조(업무) ①실무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사 전심의
- 2. 제11조에서 정한 합의대상 사항 중 위원장이 실무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감리담당부서의 감리결과에 대한 재심 요청건의 의결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실무위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위에 위임한 사항 및 지시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고 보고한다.
- ③실무위는 「재보험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재보험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고받는다.
- ④실무위는 「리스크관리·측정 요령」에 따른 위기시험 결과를 보고받는다.
- ⑤실무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측정 요령」에서 정한다.

제 5 장 인수심사위원회

- 제22조(구성) ①인수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합리적인 인수의사결정을 위하여 인수심사위원회 (이하 이 장에서 "인수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인수위는 업무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추가위원은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구 분	위원회 구성		
공통 위원	1. 인수위 운영관리담당본부장 2. 인수위 운영관리담당부서장 3.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4. 신용조사담당부서장 5. 국외보상담당부서장 6. 국내보상담당부서장 7. 프로젝트구조개선담당부서장 8. 법무담당부서장		
추가위원	1. 업무연관성이 높은 인수담당부서장(제안부서장 제외) 2. 업무연관성이 높은 영업기획담당부서장(제안부서장 제외) 3.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장		

- ③위원장은 인수위 운영관리담당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인수위 운영관리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인수위 운영관리담당부서는 「직제규정시행요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업무) 인수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u>「인수보상 위임전결규정」</u>에서 인수위 전결사항으로 정한 건의 인수와 경영위원회 의결 대상 인수건(인수규정에서 정한 경영위원회 의결 대상건 포함)의 경영위원회 부의
- 2. 기타 인수심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회의) ①인수위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부의 요청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의결은 출석에 의한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수위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 및 외부인사를 인수위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 ④인수위에 참여한 외부인사(외부 위촉 위원 포함)에게는 인수위 운영관리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 제25조(구성) ①자금운용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운용 성과평가위 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리스크관리담 당본부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 가. 자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책임연구원으로서 자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 라.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경영기획담당부서장
- 3.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 ③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리스크관리담담본부장이 선정하며, 외부위원은 자금 운용 관련 공사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④제2항 제3호의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은 자금운용 성과평가보고서를 외부평가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작성하고, 평가결과의 제출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측정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자금운용 성과평가
- 2. 자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장 전문심의위원회

- 제27조(구성) ①실무 자문을 통한 전문성 심화 및 효과적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전문심의위 원회(이하 이 장에서 "전문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전문위는 위원장 1인과 전문위 개최시마다 제4항의 전문심의위원단(Pool)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3인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심의위원 선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제28조 제1호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 위원장은 전문위 운영관리담당부서장이 되며, 제28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 위원장은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전문위 운영관리담당본부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전문위 운영관리담당부서장은 인사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인수심사 관련 업무분야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심의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전문위 운영관리담당본부장은 전문심의위원단을 선발한다.
 - ⑤제4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장기종목과 단기종목을 구분하여 선발한다. 다만, 전문위 운영관리담당본부장은 인사발령사항, 전문위 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기 중에도 전문심의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⑥전문위 운영관리담당부서는 「직제규정시행요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업무) 전문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심사 요령」에서 정한 심의 대상건
- 2. 「리스크관리·측정 요령」에서 정한 신종 보험(보증)종목 도입의 타당성
- 3. <u>「리스크관리·측정 요령」</u>에서 정한 국내기업 총액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특례지원제도 <u>도입</u>의 타당성

- 제29조(심의) ①제28조 제1호의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u>「심사 요령」</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제28조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전문위 심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 제안부서는 <u>리스크</u> 관리담당부서장의 합의 이전에 전문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의견서를 받기 원하는 날의 10영업일 전에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앞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전문위는 필요시 외부기관의 <u>도입타당성 평가</u> 용역 의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심의기간은 외부기관의 보고서 접수일 이후에 개시된다.
 - ④심의의견서 작성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이 작성한 심의의견서는 위원장이 안건 제안부서에 송부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안건 리스크관리를 위해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의견서에 포함하여 안건 제안부서에 송부할 수 있다.
 - ⑤안건을 심의하는 전문위원에게는 <u>「심사 요령」</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 제30조(위기상황 관리) ①위기상황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u>위기상황 대응계획의</u>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u>「리스크관리·측정요령」에서 정한다.</u>

부 칙(제정)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투자심의위원회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투자심의위원회는 폐지하며 규정 시행일 이전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은 재무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가능한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1년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03년 8월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이 규정은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ه	이 규정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이 규정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① 이 규정은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관련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 ⁴	부터 「인수심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0)
1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학	생한다.
	부 칙(11)
이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이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 ①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제19조 제3항 제1호는 2011년 11월 23일 이후 한도신청 및 청약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15)

이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이 규정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이 규정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 ① 이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관련 조항(20차 기준 제18조 ⑤항, 제20~23조, 제26~29조, 제35~37조)은 리스크관리·측정요령으로 이관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부 칙(22)

이 규정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이 규정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